연구시설 장비심의위원회규정

2015. 10. 21 제정 2021. 3. 8 개정

- 제 1조(목적) 본 규정은 <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> 및 <국가연구개발혁신법> 과 <국가 연구시설·장비관리 표준 지침>에 따라,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축하는 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, 덕성여자대학교 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1.3.8>
- 제 2조(정의)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정부연구개발예산"이란 정부에서 새로운 지식축적이나 창조적인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 하여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.
 - 2. "장비"란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말하며,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무균실, 저온실, 동물사육실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.
 - 3. "연구시설"이란 일반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 연구공간 을 말한다.
 - 4. "연구장비"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,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.
 - 5. "연구기관지원사업"이란 국공립 연구기관, 부처 직할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사업 (출연금)과 부,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대상 장비) 덕성여자대학교가 수행기관이면서,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및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(NTIS)에 보유장비로 등록된 장비에 적용한다.
- 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, 1억원 미만의 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
 - 2.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'연구장비예산 심의위원회'상정
 - 3. 장비의 특성, 활용기간,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(구매/개발/임차)검토 및 결정
 - 4. 3천만원 이상의 단독활용장비 및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선정 및 해제
 - 5.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저활용, 유휴, 불용장비의 판정, 자산 이관 및 처리
 - 6.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5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1. 당연직 위원 : 산학협력단장, 중앙실험관리실장
 - 2. 임명직 위원: 이학계열, 공학계열, 약학계열 소속 교원 각 1인 이상 2인 이내, 관련 전문가 2인 이상 4인 이내로 구성한다.
 - 3. 위원회 위원중 외부위원의 참여비율을 30% 내외로 할 수 있다.
 -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,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-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- ④ 위원회의 간사는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장으로 한다.
 - 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.
- 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 운영 및 업무를 통할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8조(장비심의) ① 심의가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<별지서식 1호 : 연구시설·장비심의 요청서> 및 <별지서식 제2호 : 연구시설·장비도입요구서 및 활용계획서>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

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.

제9조(기타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<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> 및 <국가연구개발 혁신법>과 <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>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21.3.8.>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21. 3. 8.>

- 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〈별지서식 제1호〉 연구시설 장비 심의요청서

연구시설.장비 심의요청서									
사업단(연구소)명									
사 업 명									
과 제 명									
과 제 번 호		부	처(연구관리	전문기관)에서 부여	한 번호			
업기스레키카	총연구기간			YYYY-MM-DD ~ YYYY-MM-DD					
연구수행기간	당해연도연구기간			YYYY-MM-DD ~ YYYY-MM-DD					
구축예정	국 문								
연구시설.장비명	영 문								
당해연도 연구비	정부출연		지자체부담		민간부담		합계		
(단위 : 백만원)									
지 원 기 관		'		지방지	가치단체				
참 여 기 관				위 탁	· 기 관				
연구책임자	성 명	명		전 화					
U 1 7 E/1	휴대폰	휴대폰		이메일					
실무담당자	성 명			전 화					
E D 0	휴대폰		이메일						

덕성여자대학교 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 규정 및 국가연구시설·장비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연구시설·장비를 도입하고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연구시설·장비도입요구서 및 활용계획서 1부.
 - 2. 규격서 또는 견적서(필수), 카달로그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.

20 년 월 일

연구책임자 소속: 성명: (인)

덕성여자대학교 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장 귀하

연구시설.장비도입요구서 및 활용계획서 1. 과제목표 및 연차별 주요장비내역 (협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) 과제목표 (사업목적) 주요장비구축 종합 실적 구 분 기 간 (3천만원 이상 장비에 대해 작성) 해당연차에 기구축한 장비목록 1차연도 또는 구축하려는 장비목록을 기재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

비고

[※] 신규사업인 경우 1차연도에 기술, 5차연도 이상인 경우 표를 복사하여 사용

2. 기본정보

구 분		내 용								
여그 김 서 자비 田	국문									
연구시설·장비명 영문 영문										
제작국가			제작사							
모델명										
구축예상금 역 (단위 : 백만										
취득방법	, ,])	구 매 (국내외구분)		임 대	제작의	뢰 자	체제작	기 타(직접기재)		
(해당란에 '○'₃	生へ 丿 							→1 →11	2) 12	
구축장비분 후 (해당란에 '○'3		기초 과학	생명	해양	천문	에너지	환경	기계 부품소 재	정보 전자통 신	
(예정원에 ○ 3	エハリ									
장비구축 예상일정	발주	YYYY-MM-DD ~ YYYY-MM-DD								
01117 11020	설치	YYYY-MM-DD ~ YYYY-MM-DD								
설치장소										
연구시설·장비용도		- 구체적인 용도 서술								
주요사양		- 심의위원 - 품목의 ※ 규격	l들이 판 특성 및 서(견적	및 성능 기 서) 필히	게 사양을 구] 이내	규격서(견적서)를		

3. 구축예정장비 중복성 자체검토 NTIS 검색

NO	장비명 (한글/영문)	제작사	모델명	설치기관 (설치장소)	취득 연도	장비금액 (백만원)	중복검색 Key word
1							
2							
3							
4							
5							
6							
7							
8							
9							
10							
	※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(http://www.ntis.go.kr) 검색 실시						

4. 연구장비 운영정보

항 목	내 용
운영기반 조성여부	장비운영기반(설치장소·환경 등)을 구체적으로 기술
운영비 확보방안	장비 운영비 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
운영 시 전문성	운영부서의 장비분야 전문성에 대한 기술
운영부서 실적	운영부서의 장비 운영실적 및 능력 기술
운영전문가 확보여부	운영 전문가의 확보여부 및 전문가에 대한 기술

5. 장비구축의 필요성 및 타당성

항 목	내 용
사업목적과 부합성	사업목적 및 연구목적을 기술하고 부합성 기술
사업분야 타당성	사업(연구)분야에 대한 구매장비의 타당성 기술
수요 및 파급효과	구축장비의 수요 및 구축 시 예상 파급효과 기술
유사동종 장비 차별성	유사·동종장비와의 차별성 기술
예산의 적정성	구입 예산의 적정성

6. 노후 대체 장비의 경우

항 목	내 용
시기적 적절성	대체시기의 적절성 기술
기존장비의 활용실적	대체예정 장비의 활용실적 기술

7. 연구장비 활용계획

항목	내 용
기본활용 계획	도입부서의 장비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
예상활용 건수/월	구축대상장비의 예상 활용건수를 월별로 기록
공동활 용 계획	기관 내.외부 공동활용여부 기술 및 계획 기록
전문인력 양성계획 /년	장비를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년단위로 기록

8.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 자체검토

(구축예정장비가 외산이고 국산대체장비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)

구분	내 용						
	장비명 (모델명)	한글		제작사			
		명 영		장비가격 (단위:천원)			
1	주요사양						
	자체 검토의견						
	장비명 (모델명)	한글		제작사			
		영문		장비가격 (단위:천원)			
2	주요사양						
	자체 검토의견						

^{*} 기타 장비구축 계획서 작성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 별첨 첨부 가능